

한국안광학회 - 이달의 학술논문 소개

*본 논문은 한국안광학회지 제27권 4호(2022년 12월 31일 발행) 게재 논문으로 저자는 학회의 동의하에 요약 발췌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논문의 판권은 한국안광학회에 있습니다.

안경광학과 학과계열 분류의 타당성 분석

심현석(광주보건대학교), 김소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성수(수성대학교), 이기석(여주대학교),
박경희(국제대학교), 김대중(경동대학교), 권오현(백석대학교), 김상현(광주보건대학교)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안경광학과 학과계열 분류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방법** : 국내 통계청 분류기준과 선진국 분류기준의 교육과정과 직업분류체계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안경광학과 분류와 안경사의 직무영역을 분석하였다.

◆ **결과**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들은 KEDI 분류에서 의약계열 > 치료보건 계열로 분류되어 있고, 안경사를 양성하는 안경광학과는 공학계열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을 해외 관련학과 분류와 비교하고, 졸업생수, 면허자수, 취업처 그리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의 직무영역, 관련 법률들의 분석을 통하여 안경광학과 분류는 교육과정과 안경사의 직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결론** : 안경사의 직무와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경광학과가 일부 공학계열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안경사의 직무영역과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새로운 안경광학과 분류가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 서론 -

1983년 2년제의 안경광학도가 개설되었고, 1987년 안경사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1989년에 안경사 면허시험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시험교과목이 정해지고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안경광학과를 04 공학계열, 0406 정밀·에너지, 040601 광학공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떠한 근거로 안경광학도가 공학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학과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안경광학도의 학과계열 분류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학과계열 분류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용하는 국내 통계청 분류기준과 선진국 분류기준의 교육과정과 직업분류체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과분류

2020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 따르면 안경광학과는 학제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 대분류 : 04 공학계열
- 중분류 : 0406 정밀·에너지
- 소분류 : 040601 광학공학 : 안경광학과, 안경광학 전공

2. 미국의 교육프로그램 분류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CIP(The 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s)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 안경광학과에 비교될 수 있는 Optometry 학과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51) HEALTH PROFESSIONS AND RELATED CLINICAL SCIENCES. (건강 전문 및 관련 임상과학)
- 51.17) Optometry (OD).
- 51.1701) Optometry (OD).
- 51.18) Ophthalmic and Optometric Support Services and Allied Professions. 51. 1801) Opticianry/Ophthalmic Dispensing Optician.

3. 국제표준분류(ISCED), UNESCO

국제표준분류에 따르면 10개의 대분류가 있으며, Optometry와 관련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Health and welfare
- Health
 - Medical diagnostic and treatment technology (Optical technology)
 - Therapy and rehabilitation(optometry).

4.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

총 8개의 학술연구 대분류에서 안경광학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이 ‘의약학 : 임상안광학’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대분류 : 의약학
- 중분류 : 임상안광학
- 소분류 : 안경학, 안경처방검사, 콘택트렌즈, 안광학, 안구해부생리학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

안경광학도가 개설되어 있는 48개 대학의 자율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대분류 : 자연과학계열
- 중분류 : 보건
- 소분류 : 임상보건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안경광학과 관련된 과학기술로는 안경렌즈, 콘택트렌즈를 제조하는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으로 분류되어 있다.

7. 보건산업진흥원 분류자료

보건산업진흥원 발간의 ‘2022년 2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취득하는 안경사 면허소지자를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보건산업 직종별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대분류 : 보건·의료
- 중분류 : 보건·의료직
- 소분류 : 보건·의료 종사자, 직종코드 307

8.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안경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 2463. 안경사

9.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2년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의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르면 안경사는 보건·의료직으로 분류되고 있다.

- 3. 보건·의료직
- 30. 보건·의료직
- 307. 보건·의료 종사자
- 3073. 안경사

10.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분류한 안경사 면허자에 대한 분류는 보건·의료인임을 다 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분류 : 06. 보건·의료
- 중분류 : 01. 보건
- 소분류 : 01. 의료기술지원
- 세분류 : 06. 시각관리

이와 같이 교육부와 KEDI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에서 안경사를 보건·의료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1983년에 개설된 안경광학과는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한 안경사를 양성하고 있다. 초창기 안경사는 영문 명칭으로 optician(안경사)을 사용하였으나, 현재 대한 안경사협회(KOREAN OPTOMETRIC ASSOCIATION)는 WCO(World Council of Optometry, 세계검안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WCO의 규정에 따라 optometrist(검안사)로 사용하고 있다.

안경광학과의 교육과정은 안경사 면허시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면허 응시자격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교과목 비율에서 약 85% 이상이 보건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된 과목들이다. 이에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직종의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경사 면허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직종의 인원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안경광학과 모집정원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대부분이 안경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안경과 관련된 업계에 취업을 한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안경사를 보건의료인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안경사도 포함되어 있고, 2020년 직종별 요양기관(안과 병·의원) 근무현황에 따르면 안경사의 수는 3,000명이 넘고 있다.

또한 안경광학과는 여러 학제가 혼재 되어 있으며,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 기준의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안경광학전공(optometry)은 보건학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안경광학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은 보건학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학계열과는 달리 안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안경광학 전공 학점은행제 이수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학계열로의 분류는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경광학과 졸업생이 안경사 면허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고, 직무영역도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사 독자적으로 굴절검사를 하고 처방하고 안경 조제 및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안경사는 안과 병·의원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처럼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안경사들의 직무는 의료기사가 아닌 더욱 넓은 직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학계열의 분류는 변경되어야만 한다.

- 결 론 -

단순히 의료기사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의약계열 > 치료보건 > 재활학(보건학, 의료공학 등)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반영하여 안경광학과(안경광학 전공 포함)의 학과 분류를 의약계열 > 안경광학 > 안경광학 전공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한다. ☞

논문 원문보기 : 한국안광학회 홈페이지
<http://www.koos.or.kr> 또는 <https://koos.jams.or.kr>